



국회 계류 중인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 내용

동향분석실

-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106건이며, 이중에서도 일몰 규정 등에 의해 처리에 시급을 요하는 법안은 ①기업구조조정촉진법, ②자본시장법, ③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④대부업법 등 4건임.

가.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(이하 ‘기촉법’)은 채권금융기관 주도 워크아웃 중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임.

- IMF 국제금융체제였던 2001년 당시 중견대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 제도의 시효가 만료되고 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자 부실 대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2001년 8월 14일 기촉법이 공포되었음.
 -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,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,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한 회생 지원에 필요한 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시법
 - 기촉법에 따라 현대건설(2001년), 하이닉스반도체(2001년), SK네트웍스(舊 SK글로벌, 2003년) 등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이었던 부실 대기업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

-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 변경 내용은 법안의 ①영구법으로 전환, ②채권자 범위 확대, ③구조조정 대상 확대 등임.

- 현행 기촉법은 한시법이나 개정안은 일몰제로 시행되는 기촉법을 상시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

- 현행 기촉법은 채권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여 직접금융 채권자도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.
- 현행 기촉법에서는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 원 이상으로 채무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.

■ 기촉법 상시화 근거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성과, 신속한 진행, 하청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등이 거론됨.

-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성과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 워크아웃이 법정관리에 비해 채무재조정, 신규자금 지원, 신속한 진행 등에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.¹⁾

■ 야당은 기촉법을 당국이 관치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및 사적자치 원칙 위배,²⁾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 논란³⁾과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영구법 전환을 반대

- 한편, 장기적으로는 국내 M&A 시장 성숙을 통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

■ 기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금년 12월 말로 예정된 일몰로 법안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중단될 수 있음.

- 2016년에는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, 조선, 해운, 철강 등 주요 취약산업의 업황 개선이 불투명하여 현재보다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.

1) 한국금융연구원 ·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(2014, 11), “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”.

2) 기촉법은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. 또한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,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리절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(구회근 · 오세용, 2011, “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모색”,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문).

3) 이밖에도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및 사법적 구제수단의 미비, 워크아웃 실무에서 기촉법에 의해 주채권은행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벌어지는 폐해 등이 위헌성 논란과 관련 있음.

나. 자본시장법

- 경제활성화 및 금융투자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①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, ②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, ③부동산펀드 운용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
-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, 먼저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(개정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(가칭) 설립) 코스피·코스닥·파생상품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할 계획
 - 한국거래소의 경우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 부재,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 등으로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진 상태이며, 독점거래소의 성격상 거래소 내 시장간 상호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시장발전이 정체
 - 외감대상기업 중 600여 개가 코스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, 9,000여 개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연 신규상장은 40건 내외에 불과
 - 이에 반해 해외 거래소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유치, 영업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소 간 경쟁과 연계·제휴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
 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 간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상품을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, M&A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중소·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 강화
 -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장·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.
- 둘째,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여신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까지 확대하고, 지급보증한도도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
 -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·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

조가 지속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

- 기업금융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도 제한 등으로 아직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.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여신업무 관련 제약이 해소될 경우 진정한 투자은행으로써의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■ 셋째, 부동산펀드 투자 대상을 현재 ‘부동산, 부동산 관련 권리’에서 ‘부동산 관련 증권, 부동산 담보부 채권,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’ 등으로 확대

-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펀드(자본시장법)와 Reits(부동산투자회사법)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이 달라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, 부동산펀드의 효율적 운용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임.
 - 부동산펀드로는 부동산 운영이 불가하여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신설하여 투자자 재모집이 필요하고,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SPC는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만 투자가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채권 등에 투자가 불가함.
-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중위험·중수익 상품을 제공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.

■ 현재 야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장차익의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음.

다.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

■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(서민금융진흥원)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목적임.

-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「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」을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규정함.
 - 법률명을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함.
- 휴면예금관리재단, 신용회복위원회, 4) 국민행복기금⁵⁾을 통합⁶⁾하고, 햇살론⁷⁾ 개인보증 기능을 분

4)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.
 5)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서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, 바퀴드림론(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 환대출),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임.
 6) 다만,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.

리·이관(2013년 9월 발표방안)함.

-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, 서민금융 기능(취업·창업 알선, 소액대출 등) 및 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 시 이관함.

■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서민금융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노출되면서,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.

- 그동안 미소금융,⁸⁾ 햇살론 등 저금리자금 공급 및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다수의 기관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⁹⁾임(원스톱 지원체계 필요).
-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고용·복지·주거 지원 연계, 제도금융권 안착 지원 등 서민자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(질적 자활지원 필요).
- 공급자별·재원별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각각 공급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이 큼(수요자 관점에서 상품개편 필요).
-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(맞춤형 채무조정 필요).

■ 법안이 제정될 경우 ①수요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고, ②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지원 확대가 가능하며, ③서민의 진정한 자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■ 야당은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의 기능이 일원화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

7) 저신용·저소득 서민에게 8~11%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임.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과 햇살론 고금리전환대출이 있음. 햇살론 생활자금대출은 대학(원)생 또는 청년층이 학업 또는 구직활동 중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. 한편, 햇살론 고금리전환대출은 대학(원)생 또는 청년층이 학자금,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금리 15%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제1금융권 이율로 지원하는 제도임.

8)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·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·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임.

9) 서민들이 많은 시간·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,

라. 대부업법

-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의 일몰기한(2015년 12월 31일)이 임박하여 동 법에서 규정된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이 폐지될 수 있는 상황
- 또한 2014년 4월 2일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39%에서 연 34.9%로 인하한 바 있으나,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상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.
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상한이 낮아지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나, 야당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.